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12일, 김형동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5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7회 국회(임사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9.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5. 9.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형동의원)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

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보험요율의 결과를 따르고 있으나, 최근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험요율 산정 체계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보험자가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과 같이 보험요율 산정 시 보험요율 산출원칙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험료의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